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90
----------	------

제출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20. 6. 9.)되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 중인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을 설치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함(안 제4조).
- 다. 통합 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공기업으로부터 회수한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예수금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공기업에 대한 융자 등의 용도에 사용함(안 제5조).

- 라.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조성하고,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시장이 설립한 공기업에 대한 공단체 상환을 위한 출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함(안 제6조).
- 마. 시장은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의 운용·관리 사무를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7조).
- 바.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운용관은 총괄기금관리관(기획조정실장)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하고, 회계 또는 기금 운용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반환할 수 있음(안 제8조).
- 사. 시장은 예탁금 및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할 때 국·공채의 이자율, 시금고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안 제9조).
- 아. 기금의 조성·재원조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0조).
- 자. 기금운용관은 재정기획관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통합 계정은 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 계정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각 계정의 운용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지정함(안 제12조).
- 차. 두 기금의 통합에 따라 감채기금의 운영 근거인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함(안 부칙 제2조).
- 카. 조례의 제명과 기금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함(안 부칙 제3조).

과. 현행 조례에 따른 각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및 결산잉여금 등은
조례의 시행일(2021년 1월 1일)부터 재정투융자기금은 통합 계정에,
감채기금은 재정안정화 계정에 승계함(안 부칙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 7. 30.~8. 3.)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회수한 융자금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4. 통합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5.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6.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7. 그 밖에 통합 계정 조성을 위한 수입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공기업으로의 융자
4. 그 밖에 통합 계정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2.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3.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

4.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을 위한 수입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고,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제1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사용하는 총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채 또는 공단체의 상환을 위해 출자금, 보조금 또는 용자금

3. 해당 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4.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및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
6. 그 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자금 예탁 등) ① 시장이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운용관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금의 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통합 계정으로 예탁한 자금은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탁 기간 만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이자)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과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목적달성 및 존폐 여부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재무국장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재정자금의 운영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위원장은 재정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재정기획관

2. 분임기금운용관

가. 통합 계정: 예산담당관

나. 재정안정화 계정: 재정균형발전담당관

3. 기금출납원: 기금의 각 계정의 운용을 담당하는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7항 중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각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의 자산·채권 및 채무 등 권리·의무와 2020년 결산잉여금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통합 계정 및 재정안정화 계정에 승계된다.

1. 재정투융자기금: 통합 계정

2. 감채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및 서울특별시 감채기금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 및 재정안정화 계정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며, 2020 회계연도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현재 설치·운영 중인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을 통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재정지출 증가가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예산담당관 김경민(2133-6812)